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10-08

수 원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9누10821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A
	[redacted]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제 1 심 판 결	[redacted]지방법원 2019. 4. 30. 선고 2018구합72612 판결
변 론 종 결	2019. 7. 24.
판 결 선 고	2019. 8. 21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8. 2. 13. 원고에게 한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10-08

이 유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주현

판사 안재훈

판사 허 승